

Korean Tax Update

September 2017, Issue 39

[조세뉴스]

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보도자료]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9.30.~10.9.)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되어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함.

- 국세기본법 제 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에 근거
- 다음 업무의 법정기한을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 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음.
 - ① 원천세 신고·납부
 - ②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 ④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 ⑤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 9 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기한은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전송기한은 당초 10.11.(수)에서 10.1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음.

행정안전부, 추석연휴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보도자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임시공휴일(2 일), 추석 연휴(3 일~5 일), 대체공휴일(6 일)로 인해 10 월 1 일부터 9 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 9 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10 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 일로 연장함.
- 참고로 9 월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 월 30 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10 월 2 일)에 따라 10 일이 납부기한이 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보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1) 개정이유

-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는 경우에 는 계열사 편입이 7년간 유예되고 있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4호). 그러나 그 기간 피인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는 3년으로 제한되고 있음. 이로 인해 피인수 기업이 대기업 계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입유예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기업이나 모기업의 매출액 규모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있어 M&A시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피인수기업의 중소기업 유지기간을 확대하여 대·중소기업간 M&A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기업 피인수기업의 중소기업 인정기간 확대(안 제 3 조 제 1 항, 안 제 9 조 제 1 호)

- 대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중인 중소기업은 유예된 지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매출액 등이 중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

국세청,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보도자료]

(조사 배경)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조사 착수) 국세청은 9. 27.(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 자금편법 증여, 공공 택지 분양권 다운계약 등 총 302명임.
- 특히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자는 잠실 주공 5단지 등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 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 취득자를 위주로 선정하였음.

(조사 방법)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여 변칙 증여 및 사업소득의 누락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임.

- 탈루세액을 엄정히 추징하는 한편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할 예정임.

*부동산실명법 제 5 조(과징금),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 28 조(과태료), 조세범처벌법제 3 조(조세포탈) 등

[예규·판례]

[판례 1] 대표이사의 보수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임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 두 60884 판결

-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임. 하지만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 26 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 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 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 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판례 2]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합병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1 항 제 8 호 및 제 4 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 두 36588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4 항은 '제 3 항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 1 항 제 8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합병 시까지 피합병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세무회계상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법인세법 제 44 조에 정하고 있는 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방식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임. 그러므로 합병 당시 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그 회수불능채권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4 항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회수불능채권을 피합병법인이 대손금 처리를 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심판례 1]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말소등기 된 데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대상이 타당함

조심 2017 지 0704, 2017. 9. 8

-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비록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의 증여계약에 따라 취득한 행위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소유권이 환원됨에 따라 더 이상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임.

[심판례 2]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임

조심 2015 지 1945, 2017. 9. 8

-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 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 이후에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 이후에 발생된 쟁점이자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충당한 이자 등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려움.

[심판례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

조심 2017 광 2955, 2017. 8. 31

-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단서는 제2호 사유 외에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진행중인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례 4] 금융·보험업자의 통화 관련 파생상품인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조심 2017 서 2375, 2017. 8. 24

- 파생상품 등의 평가이익이 「교육세법」상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점,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216, 2014.3.31.)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자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인 통화선도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중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기타영업수익임.

[심판례 5] 청구법인이 임대의무기간에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1 조 제 2 항의 취득세 추징사유인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조심 2017 지 0182, 2017. 8. 23

-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신탁의 종료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와 같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례 6]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하고 남은 잔여사업장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대상임조심 2017 지 0216, 2017. 8. 21

-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쟁점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차인이 없어 일시적 공실 상태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하는 임대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면적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면적에 포함하여야 함.

[예규 1] 산업단지 내에 연구개발업에 속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하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의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 연구 활동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단지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속한 건축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지방세특례제도-797, 2017. 9. 19

- 지식산업에 속하는 연구개발업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과 함께 동일기업 내에 다른 사업체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는 모든 경우를 포함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 내에 연구개발업에 속하

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하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의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 연구 활동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단지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속한 건축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예규 2]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재조특-699, 2017. 9. 12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예규 3]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지분율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협의분할이 완료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 제출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8, 2017. 9. 1

-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동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확정된 경우, 당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 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에 의해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예규 4]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재부가-447, 2017. 9. 1

- ①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②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 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람.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 5. 18. 선고, 2012 두 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③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예규 5]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의해 위탁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부가-441, 2017. 8. 31

- ①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의해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 15 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지역보건법」제 11 조 · 제 30 조, 「보건의료기본법」 제 41 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를 운영하고, 동 위탁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지급 재원은 보건복지부의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비 등)는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5 항 제 4 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②「의료법」제 33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라 학교법인이 개설한 대학 부속 병원(「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 3 조제 5 호나목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인 정신건강의학과 운영)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등을 실비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8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5 조 제 1 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③「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5 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위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11 조 제 1 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예규 6]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령재산-1362, 2017. 8. 28

- 공익법인 등이 국가 예산 등으로 설치한 방사광가속기를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한 후 국가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예규 7]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보고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령재산-6158, 2017. 8. 22

- 신설법인의 주주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주가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 1438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 조 제 1 항 제 3 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 2765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7 조 제 4 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임.

[예규 8]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재조세법령운용-765, 2017. 7. 13

- ①해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 56 조 제 2 항 제 2 호의 방법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선박 등 해운 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 조의 10 제 1 항 제 1 호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세법」 제 56 조 제 2 항 제 1 호가목에 따른 투자로 차감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 제 56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②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상 투자금액에 법인세법상 투자금액이 아닌 감사 보고서 현금흐름표상 투자증가액을 기재하는 착오로 인하여 「법인세법」 제 56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 제 56 조 제 2 항 제 2 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